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에 대하여

라. 기소유예

1) 通常의 起訴猶豫
가) 例1 (절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소장기 시효단기	2010. 7. 25.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증지 사건기록					
2005년 형제 67823호			주임검사	사 연 생	
피 의 자			죄 명		
이 을 동			절 도		
결 정		2005. 8. 20.			
처 분	인 명	명 령	인 집	행 인	
기 소 유 예	①	석 방 지 휘			
혐 의 없음 (범 죄 인정 안 됨) (증 거 불충 분)		피 의 자 통 지			
		고 소(발)인 통 지			
집 행	죄 가 안 됨	소 재 수 사 지 휘			
월 일	공 소 권 없 음	지 명 수 배(통 보)			
	기 소 중 지	지 명 수 배 해 제			
사 건	참 고 인 증 지				
월 일	각 하				
압 수 물 건 처 분					비 고
압 수	명 령	인	압 수 표 기 제	인	갱 생 보 호 의 회 함
월 일	가 환 부 대 로 본 환 부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 출 인 환 부				
결 과 통 지	피 해 자 환 부				
월 일	폐 기				

* 압수물로 장물인 사과 1상자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이 정법에서 배우는 **형사 절차**의 큰 흐름과 개요를 보면

수사 → 기소 → 공판 → 선고 → 형 집행이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할 수 있죠. 또한 형집행도 담당합니다. (법무부 직제에 전국 교정업무의 총괄부서인 교정본부가 있죠) 정법에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범의 문제와 **기소유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실무적 개요를 파악하면 더욱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바로 **불기소장 결면**입니다. 수사검사는 위와 같은 불기소 사유 중 하나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불기소장 결면에서 해당 사유 중 하나에 검사 자신의 직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이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하는 기소유예의 경우에 위와 같이 기소유예의 칸에 검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뒷장 불기소 이유에서 기소유예의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죠.

다음은 불기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사망,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소송조건 결여

혐의없음 :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참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우는 헌법재판소 파트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올 정법에서는 헌법소원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로서의 헌법소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추세이기 때문이죠

공유와 배포는 자유로우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2020 리갈 마인드 랩스.